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양승이 의원 대표발의】



2023. 6. 19.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6호로 2023년 5월 4일 양송이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기본원칙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 원칙 및 집행 내용의 구체적
기재 등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업무추진비 집행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신설(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입법예고(2023. 5. 1. ~ 5. 6.)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기본원칙을 정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신뢰받는 의회 행정을 구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기본원칙)**는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의 근거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관련 근거로 추가함.
- **안 제4조(집행기준)**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시 따라야 할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첫째,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둘째, 간담회 등에 사용되는 접대비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함. 셋째,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등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명·수량 등을 기재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여 사용 용도를 분명히 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도록 함. 넷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품의서에 집행의 목적·일시·장소 등을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건당 5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 대상자의 소속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남기도록 명시함. 한편,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 시 지출 건별로 작성하도록 정함.
- **안 제5조(사용제한)**는 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휴일”의 범위를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로 구체화

하고 현 조례 상 “심야시간(23시 이후)”을 “비정상시간대(23시~오전6시)”로 정정함. 또한,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표현을 정비함.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및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의 기본원칙을 정한 것으로,

명확한 집행 기준을 토대로 업무추진비 집행 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업무추진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회계법

제43조(현금 취급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21., 2015. 4. 1.>

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1.>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의 제한) ① 제3조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기부행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집행 방법은 별표 1 제8호나목 및 별표 2 제8호나목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 집행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 2023. 3. 3.>

② 별표 1 제6호 및 별표 2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 주(週) 또는 월 단위를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격려금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 3. 3.>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가. 대상: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